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교연비)” 관련 Q&A

Q1 : **교연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요?**

A1 : **교연비**는 공무원인 국립대학교원의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지급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적폐의 산물**입니다.

먼저 교원의 보수 체계 혹은 급여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미 4호’에서 말씀드린 국립대학교원의 급여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봉급 + 수당 + 교연비
봉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액 + 해당연도 정책조정액
성과연봉 = 업적평가에 기초한 성과등급에 따라 결정
수당 =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교연비 = ?

\* 봉급과 관련하여 기본연봉에서 ‘해당연도 정책조정액’은 재직년수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경력가급’과 전년도 성과지급비율을 반영하는 ‘성과가산액’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년보장 교원의 경우에는 2017년에 성과가산액 부분을 없앴으로써 소위 ‘비누적식’ 성과연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교련은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시 폐지’를 목표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선 비정년보장 교원의 경우에도 ‘비누적식’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KORUS에서는 국립대학교원의 급여 체계를 ‘봉급’과 ‘수당’으로 나누고 ‘교연비’를 수당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국립대학교원의 급여를 구성하는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거 정부가 만든 적폐에 의해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첫째, ‘봉급’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의해 마련된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둘째, KORUS 시스템이 ‘수당’으로 발표하는 급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교연비’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에 의해 마련된 ‘교연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국립대교원의 보수**는, (외환위기 극복 시절에 타직종 공무원에 비해 대학교원을 한 계급 강등한 결과물인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

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르더라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 연간 2,160만 원이 더 적은데**, 봉급과 수당 모두 각각 1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봉급'의 차이**는 첫째,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승진급 제도가 국립대학교원의 봉급 체계에는 없고, 둘째, 성과연봉 기준액도 2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수당'의 차이**는 타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국립대학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 많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게는 모두 지급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는 보직 교수가 아닌 국립대학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원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 가운데에도 국립대학교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봉급과 수당의 차이는 추가적으로 연금의 차이를 초래**합니다.

**헌법 제31조 6항과 교육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는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국립대학교원에 대해 타직종 공무원과 비교하여 생애 소득 측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우대할 것과 교육수당 및 연구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립대학교원의 보수가 **'우대'받기는커녕 '천대'받고 있고 교육수당과 연구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부는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재정 부족분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성회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사립대학교원은 물론이고 타직종 동일직급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국립대학교원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경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립대학교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일부를 기성회비에 전가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제기된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성회비의 불법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등록금반환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2013년에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의 급여보조성경비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대학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을 통해** 기존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시키고 기성회비를 폐지했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로 지급하던 형식을 대학회계에서 '교연비'라는 이름의 사업비성경비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기는커녕 공무원인 국립대학교원의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이 아닌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적폐를 고치지 않고** 사업비성경비라는 해괴한 형식을 도입하여 국민을 속이는 **새로운 적폐를 만든 것**입니다.

Q2 : **교연비가 왜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인가요?**

A2 : 기성회비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첫째,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정부가 대응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기성회비 인상을 통해 오랫동안 학생등록금을 인상해온 점, 셋째, 기성회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점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공무원의 급여 일부를 국가재정이 아니라 학생등록금으로 지급하는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학생등록금 사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경비로 지급하던 형식을 대학회계에서 **‘교연비’라는 이름의 사업비성경비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연비를 급여의 일부인 수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전액 급여로 간주하여 개인별로 한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Q3 : **교연비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 국립대학회계법이 교연비를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와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결과물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원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 학생지도를 대학교원들이 기획한 비즈니스로 둔갑시키기 위해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는 **비즈니스맨으로 둔갑하여** 매학기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심사 받아 사업비를 차등 지급받게 되었고, 사제관계 조차 **비즈니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연비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비의 결산액이 다음 해 예산액이 되기 때문에 **교연비 지급이 미실행된 만큼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4 : 그렇다면 **교연비를 원래의 인건비로 환원**시켜야 하지 않나요?

A4 :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연비는 모든 교원들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인건비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연비 지급 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폐인 교연비제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수당과 연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교연비를 인건비로 환원시키는 개선을 통해 자괴감을 느끼게 만드는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국립대학교직원들의 시간과 노력, 대학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Q5 : **교수회는 교연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A5 : 교수회는 **단기적으로 교수님들께 자괴감을 드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없애기 위해** 국교련과 연합하여 **교연비 지급 방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연비의 문제점에 대해 이제는 **교육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지난 5월 9일 개최된 **국교련과 교육부간의 협의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국교련과 협력하여 교연비 지급 방식의 가시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교수회는 **장기적으로 교연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교련이 바람직한 목표를 확립하도록** 다른 대학 교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 **교연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A6 : 교연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립대학교회계법의 제정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인하되지 않았으며, 대학의 자율성, 공공성,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간섭하고 교원을 통제하는 목적 외에 교연비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어떤 것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교연비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이 교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연구수당 및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의 차이도 줄어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국립대학교원의 급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국가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도록 해야 합니다.